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2023년 5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신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구성원이 내부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란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여 소속 기관의 행정·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
2. ‘공익신고란 위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기획혁신본부에 신고·제보 하는 것을 의미 - 다만,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 ①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②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제3조 (방법과 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익신고서를 제출
 2. 담당부서 공익 신고 접수 및 증거자료 수집
 3. 담당부서 필요한 조사 진행
- 단,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5.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공익신고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

1. 본 대학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단,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제외로 한다.
2. 고의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노출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본 대학은 신고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4.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불이익 처분이 신고행위와 관련 없고 신고행위로부터 유발되지 않았음을 해당 부서는 입증하여야 한다.
5. 본 대학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기관(부서)의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단,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 본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다른 법률 또는 규정, 제도 등에 의해 관련 절차(재판, 수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인 사항